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8.

윤한홍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 8.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 (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 12. 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한홍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황 승 기)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과거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¹⁾, 민사·형사·상사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기준

1)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2021. 2. 기준)

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정부는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 제시하며,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7월 「행정기본법안」을 제출하였고,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음²⁾.

-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기본법」 규정과 중복되는 개별법 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2단계 법체계 정비사업>

1단계 (’21년 연구용역 추진, '22년 법률안 발의 완료)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인허가의제 ③ 과징금 ④ 이의신청
2단계 (’22년 연구용역 추진, '23년 입법 추진)	① 제재처분의 기준 ② 이행강제금 ③ 직접강제 ④ 즉시강제 ⑤ 수수료 및 사용료

(자료: 법제처)

-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또는 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각 개별법에 산

2) 2020년 7월 8일 정부 제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3월 23일 공포 및 시행

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³⁾.

<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상의 법체계는 기본법이 우선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개별법은 원칙적으로 기본법상 일반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기본법과 다른 특례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개정안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기존에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공통 제도를 기본법에 맞추어 일괄정비하려는 것인데, 현행 「행정기본법」이 각 개별법보다 뒤늦게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법제 정비 작업으로 보임.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⁴⁾.

2) 주요 내용 및 검토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총 10개 법률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정비사항을 담고 있음.

3)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중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하여는 별도 발의되어 있음.(「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37호)

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405호)

<개정 대상 법률안 목록>

연번	대상 법률	부처	내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정비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공익신고자 보호법	권익위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내용은 ① 「행정기본법」(제31조)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②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상 일반규정은 다음과 같음.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법제가 정비되는 경우 향후 각 부처에서 개별법을 각각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본법의 개정으로 일괄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 확보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법률안별 주요 정비내용>

법률명(약칭)	정비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 제납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방법 규정 삭제 후 「행정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 정비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행강제금 통지 방법 삭제 후 「행정기본법」 준용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정 삭제 후 「행정기본법」 준용

법률명(약칭)	정비 주요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 정비
청탁금지법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법 체계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② 「행정기본법」과 각 개별법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제16조), 자료제출 거부(제86조), 동의를결 불이행(제92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제86조와 제92조에서는 제16조의 부과 절차를 준용).

○ 또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결 불이행(제24조의3)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을 「행정기본법」(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과 관련한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현행 개별규정과 유사하여 법제 정비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정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재 각 법률은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각 개별법 상 이행강제금 제도 현황>

법률명(약칭)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부과 수준
가맹사업법	동의를결 불이행	「공정거래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1일당 200만원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 이에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 각 개별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1조의2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제20조 제1항5)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을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개정 규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21조의2	제3항	삭제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과 중복
	제4항	안 제3항으로 이동	-
	제5항·제6항	삭제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제6항과 중복
	제7항	안 제4항으로 이동	-
	-	안 제5항 신설	「행정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관련한 「행정기본법」상 일반규정이 현행법과 유사하여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정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정비 사업 목적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5)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참고로, 개정안은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연 2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이는 기존 개별법상 특례사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그 내용에 변화가 없음.

□ 한편, 안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⁷⁾에 따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 이는 별도로 독촉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하여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의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

6)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7)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려는 것임.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각 개별법 상 이행강제금 제도 현황>

법률명(약칭)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부과 수준
청탁금지법	보호조치 미이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	3,000만원 이하
부패방지국민위원법	신분보장등조치 미이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	

-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의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 각 개별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한 수정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u>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4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제4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u>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u> <u><삭 제></u>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6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6제2항 전단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를 ““신분보장등조치”

로”로 한다.

제9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1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u>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u> <u>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u> <u>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u> <u>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⑦ <u>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u> <u>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u><삭 제></u>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만, <u>채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단서 삭제></u> <u><삭 제></u>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16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② ----- ----- ----- <u>. <단서 삭제></u>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생략)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	② ----- ----- 제

<u>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u> 다.	<u>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u> <u>정</u> ----- --.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생 략)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u>제</u> <u>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u> 다.	② ----- ----- <u>제16</u> <u>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제 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②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 ----- ----- “신분보장등조치”로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